

■ 지하수법 시행규칙 [별표 5]

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(제20조 관련)

1. 지중시설

- 가. 지상의 열교환기를 순환하는 지하수를 재주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할 것. 다만,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주입정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나. 지하수를 순환시키는 데 필요한 설치자재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로서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
- 다. 지중시설의 굴착지름은 전 구간을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, 재주입 순환통로 등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정비 및 청소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할 것

2. 상부보호시설

- 가.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의 지중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상부보호시설의 크기는 가로·세로(원형인 경우에는 안지름을 말한다) 각 15센티미터 이상,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, 상부보호시설의 바닥부가 지표면 아래로 80센티미터 이상 매설되도록 할 것
- 나. 상부보호시설의 덮개는 지표면 위로 올라오도록 설치할 것. 다만,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거나 지형 여건상 지표면과 동일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다. 상부보호시설은 내부식성(耐腐蝕性) 재료를 사용하여 훼손·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, 덮개는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할 것

3.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설

- 가.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적정 수량을 상시 확보할 것
- 나. 열교환기 내에 물리적, 화학적 침전물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거나 정수설비 또는 침전물 제거를 위한 별도 장치를 설치할 것
- 다. 집수정에서 열교환기로 유출지하수를 공급하는 펌프는 비상시를 대비해 예비용 펌프를 갖출 것

비고: "지중시설"이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수 취수정을 말한다.